

稅務相談

國民福祉向上과 더불어 增大되는 醫療需要 가운데
醫療保險의 擴大實施는 國民醫療需要를 점차 充足시키고 있다. 그러나 增大되는 醫療需要와 醫療質의 選好度에 비해 醫療機關의 發展은 現實情을勘察한 醫療制度上の 各種問題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實情이다.

本會는 이에 특히 痘院諸稅面에 關心을 갖고 痘院稅制欄을 마련하여 痘院運營 發展의 一助가 되고자 한다.

相談：鄭 基 善

서울대병원 병원연구소 수석연구원

공인회계사

柳 泰 鉉

공인회계사·正宇會計法人

〈相談題目〉 土地等讓渡에 대한 特別附加稅에
對한 質疑(大邱直轄市 M 医療法人)

〈問〉 “特別附加稅”란 어떤 租稅인가요?

〈答〉 法人稅의 附加稅로서 法人이 所有하고
있던 土地, 建物과 不動產의 權利(이하 “土地
등”)를 有償으로 讓渡할 때 생기는 讓渡差益에
대하여 各事業年度所得으로써 法人稅가 부과
되는 同時に 特別附加稅가 부과됨으로 二重課
稅를 하는 租稅로써 不動產投機을 抑制하기 위
한 것이므로 当期缺損金이 되는 경우에도 土
地等 讓渡差益이 있는 경우에는 特別附加稅를
納付하게 됩니다.

〈問〉 “土地等의 讓渡”란 무슨 뜻인가요?

〈答〉 登記与否에 관계없이 売渡·交換·法人
에 대한 現物出資等으로 인하여 所有權이 有
償으로 事實上移転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無償讓渡, 法人的 合併 및 組織變更, 換地処分
으로 地目, 地番이 變更되거나, 替費地로 充
當되는 경우와 債權保全策으로 借主의 不動產
의 所有權을 移転하였다가 元金이 回収된 후
다시 所有權을 이전한 경우(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의 요건)는 土地等이 事實上 有償으로
讓渡된 것이 아니므로 特別附加稅가 課稅되지
아니합니다.

〈問〉 特別附加稅의 課稅對象資產內容中 留意
할 事項은 무엇인지요?

〈答〉 1. 土地에 住宅을 新築하여 판매하는
경우는, 그住宅에 부수된 土地로써 建物 定着
된 面積의 10倍 以內의 土地는 除外됩니다.

2. 서울特別市에서 発行한 土地公債證書를
買入한 者가 土地를 債還받은 후 양도한 경우
는 課稅되지만 土地公債證書를 양도한 경우는
同讓渡差益이 토지양도에서 생긴 것이 아니
로 附屬되며, 附屬된 施設物과 構築物
을 포함하여, 住宅과 店舗가 함께 있는 建物
을 新築하여 販売하거나, 同一 地番上에 住宅
과 다른目的의 건물을 함께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住宅의 面積이 店舗의 面積과 같거나
큰 경우는 그 全體를 住宅으로 보아 課稅되
지 아니합니다.

3. 建物의 範囲는 附屬된 施設物과 構築物
을 포함하여, 住宅과 店舗가 함께 있는 建物
을 新築하여 販売하거나, 同一 地番上에 住宅
과 다른目的의 건물을 함께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住宅의 面積이 店舗의 面積과 같거나
큰 경우는 그 全體를 住宅으로 보아 課稅되
지 아니합니다.

4. 不動產에 관한 權利에는 不動產을 取得
할 수 있는 權利(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
물과 부수되는 土地를 취득할 수 있는 權利),
地上權, 伝賃權과 登記된 貸借權이 포함되어
이를 讓渡時 特別附加稅 課稅對象이 됩니다.

〈問〉 特別附加稅의 課稅標準 計算 및 稅率은?

〈答〉 1. 算式은 다음과 같습니다.

課稅標準 = 譲渡価額

-① 取得価額

-② 譲渡하기 위하여 支出한 費用

-③ 取得価額 × 都壳物価上昇率 × 保有期間

2. 法人이 각事業年度에 2以上의 資產을 양도한 경우는 讓渡한 資產別로 計算한 讓渡差益에서 讓渡差損(上記 ①과 ②만 고려하여 발생한 경우 限함)을 差減한 금액으로 합니다.

3. 適用税率은

- 가. 未登記讓渡土地등의 경우 : 課稅標準의 100分의 35
나. 上記外의 경우(登記후 양도하는 토지등) : 課稅標準의 100分의 25입니다.

〈問〉 謙渡価額 概念의 留意事項은 ?

〈答〉 1. 土地와 建物을 함께 양도하여 각각의 謙渡価額을 計算하기 곤란한 경우는 謙渡時點의 基準価額에 比例하여 計算하고, 共通費用 또한 같은 方法으로 按分計算합니다.

[算式] 土地(또는 建物)의 양도가액 = 총양도가액 $\times \frac{\text{토지}(또는 건물)의 기준가액}{\text{토지기준가액} + \text{건물기준가액}}$

2. 토지등을 特殊關係가 있는 者에게 時価에 未達하게 양도하는 경우 租税의 부담을 不當히 減少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時価에 依해 計算되며, 韓國鑑定院의 時価鑑定을 받아 謙渡하면 됩니다.

〈問〉 取得価額 概念중 留意事項은 ?

〈答〉 1. 建物의 경우는 減価償却의 考慮 없는 取得原価를 말하며, 建設資金利子, 整地費, 資本의 支出等 取得附帶費用一切가 考慮됩니다.
2. 例外的인 경우의 取得価額은 다음과 같읍니다.

| 区 分 | 取 得 価 額 |
|------------------------------|---|
| ① 再評価한 土地等 | 再評価前의 原始取得価額 |
| ② 無償取得 土地等 | 取得當時의 正常価額 益金算入時는 益金算入金額 |
| ③ 合併으로取得한 土地等 | 被合併法人的 当初 取得価額 |
| ④ 土地等을 交換한 경우 | 交換으로 取得하는 土地등의 時価 |
| ⑤ 1974年 12月 31日 以前取得한 土地等 | 1975年 1月 1日의 時価 또는 基準時価 다만, 1974年 12月 31일 까지의 보유기간에 도매물가상승율을 합한 금액이 1975年 1 月 1일의 時価보다 많은 경우는 많은 금액 으로 함. |

〈問〉 取得時期와 讓渡時期는 ?

- 〈答〉 1. 代金을 清算한 날을 原則으로 하며,
2. 代金清算日이 分明하지 아니하거나, 그
以前에 소유권 이전 등기시는 移転登記原因日,
3. 延拂條件의 경우는 첫회 賦払金의 支給
日과 領收日,
4. 自己建設 建築物은 준공검사필증교부일
5. 相續 또는 贈与 받는 날.
6. 代金을 清算한 날까지 完成 또는 確定
되지 아니한 資產의 讓渡 또는 取得時는 目的
物의 完成 또는 確定된 날입니다.

〈問〉 特別控除額을 算定하기 위한 都壳物価上昇率適用의 留意事項은 ?

〈答〉 1. 都壳物価上昇率은 韓國銀行이 調査한 都壳物価指數에 의하여 算定한 比率(보유기간의 월수가 12월 미만 년도는 月間都壳物価指數에 의해 산정한 比率)로써 國稅廳長이 告示한 率를 適用하게 되는 바 1983年 7月 1日
以后는 도매물가 상승율이 年 5%를 초과하는 경우는 年 5%를, 1983年 6월 30일 이전은 年 15%를 限度로 하여 適用하도록 규정하였으며, 年度別 内訳은 다음과 같습니다.

| 年 度 | 都壳物価上昇率 | 年 度 | 都壳物価上昇率 |
|------|---------|------|---------|
| 1968 | 8.1% | 1976 | 11.2% |
| 1969 | 6.8 | 1977 | 9.0 |
| 1970 | 9.2 | 1978 | 11.7 |
| 1971 | 8.6 | 1979 | 15.0 |
| 1972 | 14.0 | 1980 | 15.0 |
| 1973 | 6.9 | 1981 | 15.0 |
| 1974 | 15.0 | 1982 | 4.7 |
| 1975 | 15.0 | 1983 | 0.2 |

2. 上記特別控除額은 未登記讓渡資產 에는 適用하지 아니하며, 特別公제액은 당해 자산의 讓渡差益을 限度로 하여 적용됩니다.

〈問〉 業務用에 直接使用하고 있던 土地등을 讓渡하는 경우는 特別附加税가 免除되는지요?

〈答〉 1. 法人稅法 第59條의 3 第2項 2號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토지등을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소득의 경우는 免除하고 있는바, 留意事項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우선 業務用 土地等인 경우도 다음各號의 해당분은 除外됩니다.

가. 牧場用 売買事業用 및 賃貸事業用 土地等나. 당해 法人外의 者가 主로 使用하는 土地等
다. 사업장과 獨립하여 설치된 運動場, 競技場, 研修所 및 휴양소등으로 사용 토지등 (다만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운동경기부 설치 법인의 선수전용 체육시설용 토지등은 제외).

라. 사무실용에 직접 사용하는 건물의 부속토지로써 건물바닥면적의 10배 초과하는 토지등.

마. 국세청장이 정하는 法人的 業務와 관련이 없는 토지등.

3. 讓渡価額에相當하는 금액으로 土地등의 양도일로 3年 以内에 土地 建物 또는 機械裝置를 取得하고 이를 業務用으로 直接使用하여야 하는바, 先取得의 경우는 2年 以内에 양도하여야 합니다.

가. 先讓渡 後取得의 경우에는 取得明細書
나. 先取得 後讓渡의 경우에는 取得 明細書 및 謹渡計酬書를 法人稅課稅標準 申告書와 함께 提出하여야 합니다.

담당 : 柳泰鉉
서울·中区明洞1街1의3号(YWCA 607号)

〈問〉 1. OECF借款으로 건립된 병원의 경우 保社部로부터 國內 施設資金 용자분에 대해 利子差額을 보전받을 경우 어떻게 회계처리하여야 하는지요?

2. 保險会社의 団體退職保險을 가입하고 保險料를 불입한 경우의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는지요? (경기도 S병원)

〈答〉 1. (1) OECF차관으로 건립된 병원이 施設資金 용자분에 대해 利子 差額을 보전받는 것은 일종의 国庫補助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国庫補助金에는 특정산업의 보호·육성·진흥을 위하여 固定資產投資資金의 일부를 보조해주는 경우와 営業損失등의 보전 또는 운영자금의 충당을 목적으로 교부해주는 경우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前者의 경우는 資本的支出에 충당되는 것 이므로 其他資本剩餘金 (other capital surplus) 계정에 회계처리 됩니다.

그러나 后者の 경우는 資本的支出과 관련된 것이 아니므로 関聯損益項目에서 차감 또는 加산시키거나 医療外収益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보조금을 5,000,000원 받은 경우의 분개는 아래의 방법 중 하나를 택하시면 됩니다.

〈첫째방법〉

(차) 현금예금 5,000,000원

(대) 지급이자 5,000,000원

〈둘째방법〉

(차) 현금예금 5,000,000원

(대) 국고보조금 5,000,000원

둘째 方法에 의할 경우 国庫補助金은 医療収益項目에 나타내게 됩니다.

〈答〉 2. (1) 法人稅法 제13조와 同施行令 제18조에 의하면 法人이 脱直급여로서 充當할 수 있는 한도액은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使用人の 全員이 脱직할 경우에 脱直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推計額의 50%를 한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그러나 企業會計基準 제47조 제1항에서는 “당기의 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장래에支出될 것이 확실한 것과 당기의 수익에서 차감되는 것이 합리적인 것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추산하여 負債性 充當金으로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기본적으로 推計된 退職 紙與의 100%를 充當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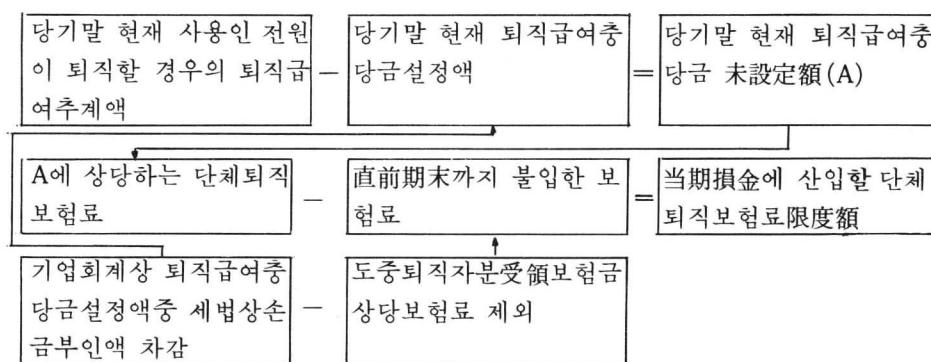
(3) 이에 따른 監査意見上의 問題를 해결하기 위하여 1975. 11. 17자 財務部 증2 1224-1852 「公認會計士 監査意見表示에 대한 要領」은 法人稅法의 규정에 따라 회계처리된 것은 타당한 會計處理인 것으로 잠정적으로 인정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4) 保險会社들은 위와 같은 사실에 착안하여 团體退職保險을 개발하고 이를 稅法에 반영시켜 保險에 따른 보험료를 손비로 처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습니다. (法人稅 法令

第13條 제 1 항 4 호)

이러한 단체퇴직보험제도는 法人の 종업원이 퇴직할 때 지급할 퇴직금의 일부를 社外에 적립토록 하여 종업원의 복지향상을 굳건히 하기 위한 제도로서 火災保險등과 같은 損害保險과는 달리 사고발생시 손해액을 전액보상해 주는 것이 아니라 収入保險料에 일정한 利子相当額을 가산하여 保険金으로 지불하는 일종의 積立式 預置的 성격을 가진 보험입니다.

(5) 保險料는 무한정 손비로 인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당기 말 현재 未設定된 퇴직급여총당금에 대해 불입하여야 할 보험료에서 직전기까지 불입한 보험료를 차감한 것이 当期에 손금으로 산입할 퇴직보험료의 한도액이 되며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습니다.



(6) 会計處理를 例로 들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퇴직급여추계액 300,000천원
- 기설정한 총당금 150,000천원
- 보험료납입액 100,000천원
- (차) { 퇴직보험예치금 100,000천원
단체퇴직급여총당금
 전입액 100,000천원
(대) { 현금예금 100,000천원
 단체퇴직급여
 총당금 100,000 천원

위의 例를 보면 한가지 去來에 대해 두가지의 分介를 하였는데, 이는 퇴직보험은 預置的性格을 갖고 있으므로 대차대조표상 자산(投資

와 其他 資產項目中 기타자산)으로 처리하여 야 하나 동시에 法人稅法上 보험료를 損費로 인정받기 위하여 또 하나의 分介를 한 것입니다.

위의 例에서 費用計上限度는 퇴직급여 추계액 (300,000천원)에서 既設定한 充當金 (150,000천원)을 차감한 잔액 (150,000천원)이 됩니다.

(7) 위와 같은 비용처리에 있어 주의하여야 할 것은 法人이 단체퇴직보험금을 수령할 權利를 債務의 담보로 제공한 경우에는 담보로 제공한 보험금에 대한 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은 費用處理를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法施行令 제13조 제 3 항)

그러나 실무에 있어 保険金이 담보로 제공되었는가의 사실확인은 보험금의 담보 사실이

登記가 되는 것과 같이 확실한 사실에 의하여 증명되기 전에는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保險會社로부터 응자를 받는 조건으로 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구분이 어려운 것입니다.

따라서 費用處理를 하시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된 保險會社에 문의하여 담보 관련사실 여부에 대한 명확한 답을 얻은 후 회계처리하셔야 할 것입니다.

(담당 : 鄭 基 善)